

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-제48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6. 7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아동위원에 관한사항과 아동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아동위원의 위촉 대상(안 제2조)

- 읍·면·동장이 추천하는 사람
- 사천시 관내 교육청교육장·학교장과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-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나.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함(안 제3조)

다. 아동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6조 ~제11조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(2007. 4. 5~2007. 4. 25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아동위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과 사천시아동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아동위원의 위촉) 사천시 아동위원(이하 “아동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,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·면·동장이 추천하는 사람
2. 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 교육청교육장·학교장과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아동위원의 임기) ①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3.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
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아동위원의 사업)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.

1.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·추천
2. 식당 등 아동급식 장소 및 급식방법 발굴
3.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관할 읍·면·동에 알림
4. 아동상담 및 지도를 청소년상담원과 상호 협조
5.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
6. 가정위탁아동·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

7. 가정위탁보호아동·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

8. 아동 관련 행사 추진

제5조(보조금 지원)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시에 사천시아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
2.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
3.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
4.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
②위원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, 사천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급식관계자·학교교사·영양사·학교운영위원회 대표, (사)한국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사천시지부장, 시 자원봉사협의회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아동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 및 단체의 장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.

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 등)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
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위원회 위원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임)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이외에 아동위원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【아동복지법】

第6條(兒童委員) ①市·郡·區(自治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兒童委員을 둔다.

②兒童委員은 그 관할구역 안의 兒童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家庭環境을 상세히 파악하고 兒童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指導를 행하며 兒童福祉指導員 및 관계 行政機關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③兒童委員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④兒童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, 兒童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兒童委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·郡·區의 條例로 정한다.